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3
----------	-----

제출연월일 : 2022. 3. 10.

제안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임의 규정인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제11조)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제11조 제1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위원 구성(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11조 제5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서 : 붙임1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붙임2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본문 중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을 “관계전문가에게”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실무협회의의 설치) ① <u>협회의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실무협회의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신 설></p>	<p>제11조(실무협회의의 설치) ① <u>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회의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u></p> <p>② <u>실무협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실무협회의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u> 2. <u>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u> 3. <u>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u> 4. <u>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신 설>

<신 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 관계전문가에게-----

-----범위에서

-----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좌 기능을 수행할 하부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추가 되는 시(市)의 재정 수반 요인은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발생 비용은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연 1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7명×10만원×2회 = 140만원)

4. 작성자

복지국 일자리복지과장 김덕환

붙임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일자리복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01)

1. 경기도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1124 (2022. 1.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01) 1부. 끝.

여 성 아 동 과 장

팀장	배진위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복지국장	전결 2022. 1. 17.	이인애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736	(2022. 1. 17.)	접수	일자리복지과-1600	(2022. 1. 17.)	
우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다산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2267	팩스번호	031-590-2269	/ qo7512@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01			
정책명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일자리복지과		
	담당자명	박태우	전화번호	031-590-86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복지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배진위/031-590-2267)				
일자리복지과장 귀하				